[별지 제14호의2서식] <개정 2025. 5. 28.> (앞 쪽)

<table>
<tr><td colspan="4">선용품공급업신고서</td><td>처리기간<br>6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<br>고<br>인</td><td>①상 호(명 칭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②대표자(성 명)</td><td></td><td>③생년월일<br>(사업자등록번호)</td><td></td></tr>
<tr><td>④주 소</td><td colspan="3">(전화번호: 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⑤자 본 금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⑥항 만 명(사업구역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/table>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| 구비서류 | 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 |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| 수수료 |
|---|---|---|---|
| | 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<br>2.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2.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입인지<br>1만원 |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

